[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office@marketfresh.co.kr

[마켓프레쉬]

정 보 공 개 서

[마켓프레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마켓프레쉬(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 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주도 제주시 과원로 84, 1층(연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64-744-894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64-744-8946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 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마켓프레쉬 외1	제주도 제주시 과원로 84, 1층(연동)			년동)	
마켓프레쉬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회	·번호	대표팩스번호
(주)	2021.11.23.	2021.11.26.	주재훈	064-744-	-8945	064-744-8946
	법인등록번호	220111-0230359	사업자등	등록번호	48	30-88-0245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마켓프레쉬 외1	제주도 제	주시 과원로 84, 1층(연동)
대표이사	사 주재훈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재훈	064-744-8945 064-744-894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인천시 서구 딛	담지로 104번길 28, 1층(청라동)
이사	강혜진	마켓프레쉬 외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재훈	064-744-8945 064-744-894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마켓프레쉬 외1	인천시 서구 딛	당지로 104번길 28, 1층(청라동)
이사	조이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재훈	064-744-8945 064-744-894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인천시 서구 딛	당지로 104번길 28, 1층(청라동)
사외이사	고영애	마켓프레쉬 외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재훈	064-744-8945 064-744-894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인천시 서구 딛	당지로 104번길 28, 1층(청라동)
이사	이명주	마켓프레쉬 외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재훈	064-744-8945 064-744-8946

3. 가맹희망자가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마켓프레쉬]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마켓프레쉬	
상 호	마켓프레쉬 oo 점	
상표(서비스표)		
광고 등 그 밖의 기타 상표		

4.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단위: 천원, 이하 절삭,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411,999	207,200	204,798	304,874	31,757	171,998
2022년	531,894	213,912	317,981	4,052,858	-88,166	113,182
2023년	963,447	540,140	423,306	6,242,756	125,344	105,325
	※ 별첨1의	재무상태표 및	및 손익계산서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8847		매출액	상한	하한	
	2021	304,874	_	_	
마켓프레쉬	2022	3,990,285	_	_	
	2023	5,687,371	_	_	
123후라이드	2021	_	_	_	
치킨	2022	_	_	_	
시긴	2023	94,593	_	_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관련여부 이름 형		사업경력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주재훈	대표이사	2021.11.23.~현재	רוו דו	회사총괄		
관련임원	구재운 	내표이자	2021.11.23.~연재	대표	외 사용될		
	강혜진	이사	2024.07.01.~현재	이사	사내이사		
가맹사업	조이진	이사	2024.07.01.~현재	이사	사내이사		
비관련임원	고영애	사외이사	2021.11.23.~현재	이사	사외이사		
	이명주	이사	2024.10.16.~현재	이사	사내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NA	상근	비상근	극전구(8)	
2023년 12월 31일	5	0	1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 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기메보티	가맹본부 ㈜마켓후레쉬	가맹사업	2023.6.~현	123후라이드치킨(등록번호:20241274)이
가장근구		경영	재 1)	라는 영업표지의 치킨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해당 사항 없음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¹⁾ 직영점 개시일을 시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마켓프레쉬]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계약체결 사실이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1년 11월 26일)

2. [마켓프레쉬] 연혁

가맹본부	антт	대표자의	가맹사업	조디 사무스 스케지
상호	영업표지	이름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마켓프레쉬	미케ㅠ게시	ᆽᆔᇹ	2025.1월	제주도 제주시 과원로 84,
(주)	마켓프레쉬 	주재훈	예정	1층(연동)

3. [마켓프레쉬] 업종

영업표지	업종		
마켓프레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종합소매점	슈퍼(음료, 과일, 야채, 정육, 과자 등등의 소매상품)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마켓프레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021.12.3	1	2	022.12.3	1	2	2023.12.3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_	1	1	_	1	2	_	2
서울	_	_	_	_	_	_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1	_	1	1	_	1	2	_	2

5. 바로 전 3년간 [마켓프레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0	_	_	_	_	_	_
2021	_	_	_	_	_	_
2022					_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6. [마켓프레쉬]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절삭, 부가세 미포함)

(근게· 연간, 크ㄱ, 누기세 미ㅗa/								
	2023년		2023년	년 가맹점사 업	법자의 연간	매출액		
지역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상	<u>카</u>	하	한	비고
	가맹점	연간 평균	면적	λ L = I	면적	크(크)	면적	0177
	수	매출액	3.3m ² 당	상한	3.3m ² 당	하한	3.3m ² 당	
전체	_	해당 없음	_	_	_	_	_	
서울	_	해당 없음	_	_	_	_	_	
부산	_	해당 없음	_	_	-	_	_	
대구	_	해당 없음	_	_	1	_	_	
인천	_	해당 없음	-	-	1	-	_	
광주	_	해당 없음	1	1	-	ı	_	
대전	_	해당 없음	-	1	_	ı	_	
울산	_	해당 없음	1	1	_	ı	_	
세종	_	해당 없음	İ	ĺ	-	ı	_	
경기	_	해당 없음	Ī	Ī	_	ı	-	
강원	-	해당 없음	_	_	_	-	-	
충북	_	해당 없음	_	_	_	-	-	
충남	_	해당 없음	-	_	_	-	-	
전북	_	해당 없음	-	_	_	-	_	
전남	_	해당 없음	-	-	-	ı	_	
경북	_	해당 없음	_	-	_		_	
경남	_	해당 없음	_	_	_	_	-	
제주	_	해당 없음	_	_	_	_	_	
			당사는	해당 사항	이 없습니	다.		

8. [마켓프레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_	_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총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연북로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46 연합빌딩	064-712-3407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농협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 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마켓프레쉬]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테리어 외 품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마켓프레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자율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71 OH HI	영업비밀 전수비	3,300	계약 체결 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오픈 후 소멸	최초 계약에
가맹비	최초 교육비	2,200	예치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	교육 후 소멸	한함

2) 보증금은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켓프레쉬]를 운영하기 위해 귀하 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합계	5,500
가맹비	영업비밀 전수비	3,300
77801	최초 교육비	2,2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귀하가 창업 시 예산을 고려하는데 참고하도록 <u>권장평수를 기준으로 추정되는</u> <u>창업비용을 예상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 추정비용은 당사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에 불과한 것이기에</u> 면적, 점포가 처한 내·외부 환경, 설비의 추가 여부 등의 변수로 실제 견적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의 비용에 대하여 귀하와 공동투자로 개별 분담을 하며, 협의된 귀하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별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0	4,400				66㎡기준
간판	자율	5,500	275	업체와의	착공 이전	착공 이후	
인테리어	또는	11,000	550	계약에 따르며,	착공 이전	착공 이후	
시설 및 장비	권장업체	55,000	2,750	아래	주문 전	주문 후	
집기류	주1참조	11,000	550	주1참조	발주 전	발주 후	
POS	지정업체	5,500	275	업체의	라의 계약에	따름	주2참조

- < 71> 인테리어, 간판, 시설 및 장비, 집기류 등의 구입은 자율로 시공하거나 또는 가맹희망자가 요청 시 당사가 권장하는 업체를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 구매시 당사의 매뉴얼에 따른 시공과 시설 및 장비의 사양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2> 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POS와 테이블 오더 지정업체는 <u>익스트림 포스이며, 월간 임</u> <u>대비용은 33천원(부가세 포함)입니</u>다.
- ※ 귀하의 매장 내 모든 상품 및 재고 상품 등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 ※ 상기의 인테리어, 간판, 시설 및 장비, 집기류 금액은 당사가 <u>66㎡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릅니다. 따라서</u> 정확한 금액은 계약 체결 후 매장 실측을 통하여 세부견적을 별도로 산출해 드리니 **반드시 세부견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인테리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철거, 실외공사, 파사드(테라스공사), 냉난방기(공조), 덕트 공사, 전기증설공사, 소방, 가스, 화장실, 계단 등은 별도 견적으로 추가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자율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지역 선정 → 당사의 가맹점들과 영업지역 중복여부 확인 → 시장 분석 → 인허가 요건 점검 → 출점가능여부 회사 → 가맹희망자 동의여부 구함 → 당사의 개점 승인

※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귀하가 당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 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당사에 책임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청결 및 서비스, 품위를 준수할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마켓프레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비고
인테리어	목공 외			
간판	간판 외	 가맹계약에 비포함	자율 또는	
시설 및 장비	냉장고 외	가정계측에 미도함 	권장업체	
집기류	곤돌라 외			
POS	POS	가맹계약에 비포함	익스트림 포스	

- ※ POS는 별도의 유지비용이 발생합니다.
 - 8) 당사는 가맹금의 분납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 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수수료 (위탁수수료)	당사 (귀하)	<u>아래※1,2</u> 설명참조	익월 15일	미반환	영업표지 사용 및 가맹점운영권 부여/사용 대가	
광고 분담금	당사	아래※3 설명참조	명세서 수령 후 2주내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후	
교육 훈련비	당사	실비 정산	정산 후 고지	교육 미실시	교육실시 후	
POS 비용	지정업체	33(월간)	업	체와의 계약에	따름	익스트

						림	포스
지연이자	당사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미반환	대금연체 시		

※1. 당사는 매출원가와 각종 비용을 공제한 월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귀하와 합의된 약정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며, 가맹수수료는 당사의 월보수를 말하고 위탁수수료는 귀하의 월보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은 당사의 명의로관리 및 운용되기에 귀하가 받아갈 위탁수수료의 현금흐름은 귀하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u>귀하의 매장 내 모든 재고 상품등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는 귀하에게 상품 등의 판매를 위탁하는 관계로</u> 귀하에게 구입을 강제시키는 상품 등은 없습니다.

<u>가맹수수료(위탁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서 별지1을 참고하여 주시길</u> 바랍니다.

- ※2. 계약 기간 중 당사의 <u>투자비가 전액 회수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u> 가맹수 수료와 위탁수수료의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 광고분담금 산정기준
 - 가맹점 모집광고일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전액부담
 - 가맹점 매출증진을 위한 브랜드 광고와 서비스/상품광고일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50%, 가맹점 사업자가 50%를 각각 부담
 - 가맹점 모집광고와 가맹점 매출증진을 위한 브랜드 광고와 서비스/상품광고가 복합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60%, 가맹점사업자 40%를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위생과 청결 관리	매장 내 청결 및 위생관리	수시	
POS 관리	매출 관리	수시	
상품 등의 관리	판매 상품의 재고 현황, 품질 관리	수시	
접객서비스	대고객 서비스 상황 관리	수시	

[※] 영업외 매장상태 및 서비스 등 관리·감독 사항은 V-8-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란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을 사유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전을 수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의 계약승계 여부
- (1)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사항에 대하여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 예정대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조치합니다.
- (2) 전항의 승계에 따른 계약조건이 가맹본부와의 계약조건과 동일하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가맹금의 반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업표지, 지식재 산권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표지, 지 식재산권 등이 만료로 인한 소멸, 변경, 효력 상실을 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 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에 의한 가맹본부의 대체수단이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새로운 가맹계약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과 절차는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권리 및의무(채권,채무,계약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양수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 중 최초 교육비를 부

담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 당사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 경우 가맹점운영권 및 그에 수 반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영업을 중지하고 즉시 폐점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 종료와 동시에 당사는 점포 내에 입회해서 모든 영업용 물건, 재고 상품을 점유 · 관리할 수 있으며,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귀하는 원활하고 신속한 정산종료를 위하여 당사에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가 당사로부터 대여받은 인테리어 및 간판, 시설 및 장비의 파손이 발생될 경우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 반환하여야 하며, 당사는 귀하의 비용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가맹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은 가맹계약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 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마켓프레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비고
인테리어	시공 외	시방서에 따름			X	
간판	간판 외	시방서에 따름			Х	아저디
시설 및 장비	냉장고 외	매장 규모별 상이	권장	자율 또는 권장업체	X	<u>약정된</u> <u>비율에</u>
집기류	곤돌라 외	매장 규모별 상이			X	<u>따라</u> 공동투자
POS	POS 외	제품별 규격	강제	익스트림 포스	X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품목 중 거래형태가 권장인 품목은 자율로 구매가 가능하며, 귀하가 요청 시 당사 가 권장업체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u>※ 귀하의 매장 내 모든 재고 상품 등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는 귀하에게 상품</u> 등의 판매를 위탁하는 관계로 귀하에게 구입을 강제시키는 상품 등은 없습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마켓프레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마켓프레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 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마켓프레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가 지정하는 별첨2와 같은 상품·용역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담배는 소비</u>자에게 판매가 불가한 상품이니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품 용역 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거래처가 납품하는 상품 · 용역 (별첨2 참고)	좌측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용역을 매입 또는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사전에 문서로써 승인을 받아야 함	가맹계약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품목별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전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변경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청소년 유해약품이나 환각물질,	판매금지	1회 위반: 서면 경고 2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유해매체
모든 고객	담배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지역별로 지역상권에 맞추어 예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2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등을면 집중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종합소매점	마켓프레쉬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반경 250M	가맹계약서에 별첨으로 영업지역 표시

당사는 상기의 표와 같이 영업지역의 설정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매장에 대한 영업지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후 계약서에 별첨을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 (안) 작성 → 가맹 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 업자 동의 → 영업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마켓프레쉬'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11번가	www.11st.co.kr	고기류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고기어때	https://smartstore.naver.com	고기류		
	에어라인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	고기류	소매판매	
	※ 자세한 취급품목은 별첨 3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마	l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ı	99	_	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마켓프레쉬]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가맹계약이 갱신된 경우 [5]년씩 갱신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2 100 2 0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⑤, 아니오→A ② 기메타리 기메큐 내어리에게 기큐 내어를 끊은 내려오고 기큐 토디르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D-10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0-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_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_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양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에 위반이 발생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 훈음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사항을 위반 준수에 관한 면 비용이 같

우는 제외한다.

- ※ 당사의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별첨1의 가맹점표시를 계약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4조 제3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표지를 사용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대금납부를 전부 또는 일부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3항의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갑" 또는 "갑"의 직원의 점포 출입 및 점검을 방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32조의2 자료제공의무를 해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 제1항에 따른 상품이나 품목을 구비하지 않거나, 제4항의 사전 서면 혐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양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양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양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별지(4) 패널티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별지(4) 패널티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시정조치 경고 2회 이상 받은	계약 해지 사유(당사의 해지권)	
가맹점사업자가 제4조 제3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표지를 사용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대금납부를 전부 또는 일부 위반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3항의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갑" 또는 "갑"의 직원의 점포 출입 및 점검을 방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32조의2 자료제공의무를 해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 제1항에 따른 상품이나 품목을 구비하지 않거나, 제4항의 사전 서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양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별첨1의 가맹점표시를 계약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4조 제3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대급납부를 전부 또는 일부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대급납부를 전부 또는 일부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3항의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3항의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갑" 또는 "갑"의 직원의 점포출입 및 점검을 방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32조의2 자료제공의무를 해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 제1항에 따른 상품이나 품목을 구비하지 않거나, 제4항의 사전 서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양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양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양도를 하는 경우	제37조

- ※ 당사의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당사의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37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본계약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당사의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수정에 관하여 합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3항
가. 영업지역 변경에 합리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7조 제2항
나.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을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만 가맹점운영권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1 개백전 우역 기수는 수조	가맹점사업자가 30일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 수도 계약 체결(통지 후 1개월 이내에) → 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새로운 가맹계약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과 절차는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권리 및의무(채권,채무,계약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양수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 중 최초 교육비를 부담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및 위탁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맹점운영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사유 발생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 통지 → 본부의 승인 → 모든 권리·의무 이전	가맹계약서 제40조 참조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이 속한 특·광·시·도(광역자치단체) 또는 경계가 연접한 특·광·시·도에서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종합소매점	경업 불허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일 13시간 이상 권장하며, 영업시간은	365일(설연휴, 구정연휴	
상권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제외) 오픈 원칙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경우,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 당사와 협의를 통하여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영업시간과 영 업일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มอ
4명 이상	해당 사항 없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직원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위생과 청결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장과 종업원의 위생 및 청결 상태 검사 →	수시	당사의 슈퍼바이져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POS 시스템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POS 사용현황 확인→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상품 등의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상품 등 판매 상황, 물품 등의 관리상태, 신선도 확인→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및 가맹점 관리 담당자	
접객서비스	담당자 매장 방문 → 가맹점사업자, 직원 등의 대고객 서비스 현황파악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마켓프레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전국적인 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동의를,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약정을 체결하여 진행을 합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		비율	분담 절차	비고
十正	9797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음 결사	미끄
광고	상품·브랜드	50%	50%	광고비 분담금은 다음	
전체	상품·브랜드+ 가맹점사업자모집	60%	40%	분기 첫달 말일까지 청구하고, 2주내에	
행사	가맹점사업자모집	100%	_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판촉 행사	전국 규모 또는 지역 단위 행사	별도 협의를	를 통해 진행	별도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가맹계약서 제2조

제9호에 의한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 유출할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의 해지 및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참고할 것)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규정에 관하여는 귀하가 <u>가맹계약서 제43조의2를 참고하</u>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귀하가 개점 전 귀하의 귀책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에게 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포 착공 전에는 가맹계약서 별지(2)와 별지(3)에 따른 발생 총비용의 10%를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점포 착공 후에는 점포 착공 전 위약금에 더하여 원상회복 비용을 추가하여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가 부담하며, 모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하여 부담합니다.
- 가맹계약서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귀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경우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여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 1) 본 계약 개시일 이후 3년 미경과 시. 단, 1개월 미만 운영 시 위탁수수료는 전점의 평균 위탁수수료로 갈음한다.
 - : 월평균 위탁수수료 X 6개월 + 가맹계약서 별지(2)와 (3)의 잔존가액
 - 2) 본 계약 개시일 이후 3년 경과 시

- : 월평균 위탁수수료 X 4개월 + 가맹계약서 별지(2)와 (3)의 잔존가액
- 3) 본 계약 개시일 이후 4년 경과 시
 - : 월평균 위탁수수료 X 2개월 + 가맹계약서 별지(2)와 (3)의 잔존가액
- 귀하가 가맹계약서 별지(4)에 해당하는 위약행위가 발생 시 규정된 바에 따라 각 건별로 위약벌금을 당사에게 지급하며, 위약벌금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와 합의된 영업시간을 미준수하거나 영업일수를 미준수할 경우 아 래 각 호에 따라 귀하는 영업배상금을 부담하며, 당사는 귀하의 위탁수수료 정 산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1) 영업시간 미준수 영업배상금
 - = 월차임*[(전체 월 영업시간-실제 월 영업시간)/전체 월 영업시간]
 - 2) 영업일수 미준수 영업배상금
 - = 월차임*[(전체 월 영업일수-실제 일 영업일수)/전체 월 영업일수]
-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_
가맹희망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없음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6~45	없음
입지 선정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없음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조건 협의	D-30	없음
가맹금 예치	- 가맹본부 계좌로 예치	D-29(1일)	정보공개서 8-9페이지 참고
점포실측 /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_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정보공개서
인테리어 공사	1)-92		9페이지 참고
교육 실시	- 공사 기간 중 교육 실시	D-7~4(3일)	인테리어 기간 중 실시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최종리허설	D-3~1(3일)	가오픈
개점 행사	- 가맹점 영업시작	D-day	오픈행사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추정한 일정이며, 협의 과정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증감됩니다. 또한 인테리어는 바닥면적 66㎡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같은 평수라도 점포의 형태, 노후 정도, 구조 등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

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 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 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용 으인테리어 공 사비용(각종 집 기·장비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 의 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일 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 시함에 따라 소 요되는 비용은	O 점포의확장 또는 이전수반하지않는 보수보수20%의 이전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노후시설노후시설수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 점사업자간 별도의 합 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한 경우 : ※1참조 <분할지급 시 절차> ○ ※2 참조	ㅇ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 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료(계약 의 해지·영업양 의 해지·영업양 그 한 장 하지 한 이 지 하는 부담에 아니하 거나 이 이 이 는 하지 이 이 이 는 한 수 가능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2.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 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경영 지도	1) 계약 이행2) 표준화3) 시장조사4) 판촉5) 가맹점의 경영상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또는 인력파견 통지(경영지 도내용, 기간, 인력파견 현황,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 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지도 후 결과 제시 또는 인 력 파견 결정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본부 부담 or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계약서 제23조 참고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마켓프레쉬] 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 교육	회사 소개, 상품진열, 판매교육, 종업원 관리, 위생과 청결, POS 사용 등	실습 교육 또는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특별 교육	교육 내용에 따라 다름	1 1 0 1	개별 협의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 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최초 교육의 경우 교육·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오픈이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마켓프레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최초 교육	7일 (1일 8시간)	없음	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 교육	교육 일정에 따라 다름	실비청구	필수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원 또는 직계가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오픈(개업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및 보수 교육에 불참할 경우 가맹점 운영권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제주	연동점	제주도 제주시 과원로 84, 1층(연동)
'	제주	이도점	제주도 제주시 신설로9길 25, 103호(이도이동, 노브힐 하우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1년 약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절삭, 부가세 제외)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세금신고 기준이며 1년
3,021,413	미만 운영의 경우
	환산매출 적용

-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별첨 2. 판매가 허용된 상품 및 권장가격
- 별첨 3. 온라인, 홈쇼핑 등의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세부 취급상품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64-744-894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 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3)



	27	- 준 재 목			11 3	II.			
		(일반법	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4	80-88-02459	ulaled	ul-9	에 ^교 레	쉬 주식	2021년12월31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220	0111-*****	법인명	마켓프레쉬 주식 회사 계 정 과 목		2021	년 12월31	일 연재	
계 정 과 목	코드	급 액		계 :	정 과	목	코드	큥	oli
I.유동자산	001	393,502,852					-		
(1)당좌자산	002	393,502,852					_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3	343,048,493							
4. 매출채권(공사.분양수입 외)	009	50,454,359					-0		
가,외상매출금	010	50,454,359							
(2)재고자산	044	0	-	-			-		
(3)기타유동자산	067	0 V 10	LR	b			-		
Ⅱ.비유동자산	080	18,496,667		-1	1			_	
(1)투자자산	081	0		-	70		- 5		
(2)유형자산	110	18,496,667			1				
7.차량운반구	134	20,000,000				-	- /		
(감가상각누계액)	135	1,503,333			100	6.	-		
(3)무형자산	169	0				0			
(4)기타비유동자산	194	0	1	700		-	-54		
자산총계(I+Ⅱ)	228	411,999,519							
I.유동부채	229	207,200,716				7			
1.메입채무	230	182,846,686			- 17	OL	-5		
가.외상매입금	231	182,846,686		7	H	20/			
3.미지급금	238	20,981,520			11	8/-	-54		
가,미지급법인세	239	20,981,520	1	/	14	1	-		
5. 예수금	246	3,372,510	-	à.		/-	- 7		
가,부가가치세예수금	247	3,196,480	4 /	ò	/		-0/		
라,기타예수금	250	176,030	11						
Ⅱ.비유동부채	284	.0					-		
부채총계(I+II)	333	207,200,716					100		
Ⅲ. 자본금	334	32,800,000							
1.보통주자본금	335	32,800,000							
Ⅳ. 자본잉여금	337	0							
V.자본조정	348	.0							
VI.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0							
Ⅷ.이익잉여금	372	171,998,803						_	
5.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81	171,998,803					-		
자본총계(III+~ VII)	382	204,798,803	-						
부채와 자본총계	383	411,999,519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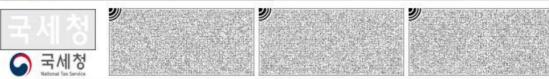


^{*} 본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민원증명』서비스에서『민원증명 원본확인』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변조

(3/3)

	953C	SURVINOS	B/NSS/JT	350
G	85	3365FA		10
S				佐
=	級	132	200	g)
				ij,

2021년 11월 23일 부터	표주소인계사서			법인명		마켓프레쉬 주식회사		
2021년 12월 31일 까지		E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사업	자등록번호	480-88-02459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급	엑
I.매출액	001	304,874,351	_					
1.상품매출	002	304,874,351						
가.국내상품매출	003	304,874,351					0	
Ⅱ.메출원가	035	232,864,899						
(1)상품매출원가	036	232,864,899						
2. 당기매입원가	038	233,127,399						
5. 타계정대체액	041	262,500	RE			-		
Ⅲ. 매출충손익	066	72,009,452		Pr.		1		
IV.판매비와관리비	067	40,251,916		10		100	7	
1.급여	068	25,790,530	-					
나.직원급여	070	25,790,530				0		
3.보험료	078	2,068,170		V	63 /			
4. 복리후생비	079	196,365			0	1		
6. 임차료	081	21,900			-	-		
다,기타임차료(리스료 포함)	084	21,900						
7. 접대비	085	153,000			X	7	_	
8.유형자산감가상각비	086	1,503,333		1 10	0/-	-		
10.세금과공과	090	218,420	7	11/	2/			
13.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093	384,219		11 0	N/-	2		
20. 지급수수료	104	5,462,803		19	/			
가,국내지급수수료	105	5,462,803	21					
22.소모품비	108	2,678,944	10	/				
24. 운반비	110	1,090,732	_					
27. 수선비	113	20,000				1		
30.인쇄비	116	333,000				1		
31.교육훈련비	117	330,500						
V.영업손의	129	31,757,536						
Ⅵ.영업의수익	130	161,485,287				1		
1,이자수익	131	10,061				5		
28. 기타잡이익	174	161,475,226						
Ⅷ.영업의비용	179	262,500						
15. 기부금	206	262,500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217	192,980,323						
IX.법인세비용	218	20,981,520				1		
X.당기순손익	219	171,998,803						



^{*} 본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민원증명』서비스에서『만원증명 원본확인』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번조

재무상태표

제 2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마켓프레쉬 주식회사(23년통합본) '결산

(단위:원)

	71	_			제 2(당)기	1	제 1(전)기 급 역		
	과	4			금액				
자				산					
ነ. 유	동	1	자	산		498,483,817		425,679,400	
① 달	퐉		자	산		175,942,597		317,558,409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113,707,750		282,622,006		
단	71	투지	사	산	34,996,980		7,230,000		
OH	츋		채	권	3,517,319		3,985,855		
선		급		금	23,720,548		23,720,548		
② 제	고		자	산		322,541,220		108,121,000	
상				품	322,541,220	No. 10 No. 10 No. 20 No. 20	108,121,000		
II. I I	유	동	자	산		464,963,340		106,214,946	
⊕ ₹	자		자	산		0.2004.004.004.005.004.0			
Ø R	8		자	산		157,563,340		24,214,946	
차	랑	운	반	7	91,728,000	540-540-4-640-640	28,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애	(21,968,351)		(9,845,329)		
ы				품	103,750,000		6,5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애	(15,946,309)		(439,725)		
3 7	8		자	산		160,000,000	4200 0000 0000		
영		업		권	160,000,000				
@ 7	타비	#	동 자	산	2400 - 14	147,400,000		82,000,000	
임	차	보	증	금	147,400,000		82,000,000		
자	산			7	Andreas	963,447,157		531,894,355	
¥				제	42				
1. R	동	1	¥	채		130,257,097		213,912,988	
OH	입		채	무	74,713,325		177,186,721		
01	지		급	금	12,298,413	1	10,282,975		
예		수		금	5,500,380		3,615,320		
부	71 1	네 여	수	금	29,575,659		19,389,967		
0	지	급	세	금	8,169,320		3,438,005		
II . H	Ħ	동	¥	챼		409,883,238			
장	7	차	입	금	409,883,238				
¥	챼			7	4.20-40-40-0-0-0-0-0-0-0-0-0-0-0-0-0-0-0-0	540,140,335		213,912,988	
자				본					
1. 자		본		급		32,800,000		32,800,000	
자		본		금	32,800,000		32,800,000		
॥. 자	본	임	0	급					

재무상태표

제 2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마켓프레쉬 주식회사(23년통합본) '결산

(단위:원)

	34 B								제 2(당)기	제 1(전)기		
				17		7					7	94	급	QI .
	m.	자	8		ĕ		3	5		정				
1	IV.	기	타	<u> </u>	*	ė	익	÷	A	ᅄ				
9	٧.	0		익		임		여		급		390,506,822		285,181,367
		0	1	쳐	분	01	익	잉	여	급	390,506,822	27 17.5	285,181,367	50 m
(-	3	7	1	Ė		이		익)				
	ç	371	1	05,	325	,45	5							
	3	171:	ា	13.	182	,56	4			1				
자			+	¥						71		423,306,822		317,981,367
¥		채	5	4	N	ŀ	본			7		963,447,157		531,894,355

손익계산서

제 2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마켓프레쉬 주식회사(23년통합본) '결산

(단위 : 원)

		5	-	_				제 2(당)	기	제 1(전)	기
			과	4				₽ 9		금역	ŀ
1.	매			*			옉		6,242,756,680		4,052,858,646
	상		품		пH		奁	5,660,001,788		4,052,858,645	
	제		품		пH		查	214,584,792			
	지	2	ı	금	а	H	查	368,170,100			
и.	매		•		원		가	7.	4,505,116,399		3,090,943,856
	상	Ŧ	0	1 1	•	원	가		4,291,748,197		3,090,943,85
	기	초	상	품	재	P	ᅄ	108,121,000			
	8	7	상	품	оH	입	OH	4,515,776,531		3,199,064,856	
	타	계	정	으로	C	내 체	OH.	9,610,114			
	71	말	상	품	재	Z	OH	322,541,220		108,121,000	
	제	#	0	1 1	•	원	가		213,370,202		
	71	초	제	품	재	2	OH				
	당	7	제	苦 7	제 조	원	가	213,370,202			
	71	말	제	품	재	Z	OH	5-25-50-6-6-6-6-6-6-6-6-6-6-6-6-6-6-6-6-6-6			
II.	매	1	ŀ		C	P	익	7	1,737,640,281		961,914,789
٧.	판	4	비	와	관	리	비		1,612,295,720		1,050,081,010
	직		원		급		여	643,489,548		499,344,794	
	상			04			금	16,340,600		3,700,000	
	퇴		직		급		여	34,197,916		30,032,230	
	복	2	l	幸	4	H .	нI	36,299,982	ľ	47,261,005	
	04	н	1	皿	-	5	비	2,659,434	ľ	2,398,256	
	접			대			нI	1,102,700	ľ	365,000	
	동			신			비	9,691,558	ľ	8,077,142	
	수	5		광	8	검	нI	14,070,922	ľ	2,965,902	
	전			et			비	87,672,193	ľ	2,088,890	
	세	己	I	+ ;	3	과	금	39,919,800		14,713,950	
	감	7	ŀ	상	2	4	비	27,629,606		8,781,721	
	지	Ē	1	임	ž	4	豆	191,439,884		156,261,264	
	수			선			비	27,262,100		17,319,864	
	보			험			显	39,806,820		11,107,780	
	차	20	P	유	2	17	비	20,929,663		9,206,494	
	운			반			ы	17,747,480		5,557,414	
	亚	OF C	ř	毫	ş	Ħ	비	1,120,000		1,035,000	
	도	4	1	인	4	4	ы	4,466,100		15,004,450	
	사	두	L	용	2	뚴	비	2,678,280		6,753,939	

손 익 계 산 서

제 2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마켓프레쉬 주식회사(23년통합본) ' 결산

(단위 : 원)

전)기	제 1(전	71	제 2(달				4	-				
옉	=		7				-	과		*		
	79,065,724		68,264,467	н		품		모		仝		
	78,002,839		222,682,735	豆	Ē	4	수	급		지		
	13,836,775		20,881,272	비	4	7	선	7		광		
			40,000,000	нI	4	상	산	자	혆	무		
	37,200,577		41,942,660	비	입	7	품	용	리	관		
-88,166,221		125,344,561		익		ol		일		영	٧.	
219,502,714		970,903		익	>	4	의	업		엉	VI.	
55 50	417,724	-u.	969,609	9		Ŷ		자		0		
	219,084,990		1,294	21			0			잡		
8,311,973		11,952,836		8	1	8	의	업		영	W.	
	11,650		7,391,546	용		нj		자		0		
	8,000,000		4,505,120	금			부			기		
	300,323		56,170	실			ė			잡		
123,024,520		114,362,628		익	이	t 전	차 김	4	인	법	W.	
9,841,958		9,037,173		등		4		인		법	IX.	
S 312	9,841,956	Policies 547	9,037,173	등		M		인		법		
113,182,564		105,325,455		억	1	0	순	기	- 8	8	x.	

별첨 2. 판매가 허용된 상품 및 권장가격

Т	세부 품목								
구 분	품 목	단 위	강제 여부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비고				
	류가 12,000가지 넘는 형된 별도의 엑셀파일	모두 권장	모두 X						

- ※. 당사는 매출원가와 각종 비용을 공제한 월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귀하와 합의된 약정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며, <u>가맹수수료는 당사의 월보수를 말하고 위탁수수료는 귀하의월보수를 의미합니다.</u> 다만,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은 당사의 명의로 관리및 운용되기에 귀하가 받아갈 위탁수수료의 현금흐름은 귀하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u>귀하의 매장 내 모든 재고 상품 등의 소유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는 귀하에게 상품 등의 판매를 위탁하는 관계로 귀하에게</u>구입을 강제시키는 상품 등은 없습니다.
- ※. 계약 기간 중 당사의 <u>투자비가 전액 회수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u> 가맹수수 료와 위탁수수료의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제시된 상품 등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협의된 상품 등의 판매가격 변동 시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별첨 3. 온라인, 홈쇼핑 등의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세부 취급 상품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11번가	www.11st.co.kr	돼지고기, 소고기	온라인판매
온라인	고기어때	https://smartstore.naver.c	돼지고기, 소고기	온라인판매
	에어라인마켓	https://smartstore.naver.c	앞다리살, 오겹살, 목살	온라인판매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수령 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가맹희망자

성 명: (인 또는 사인)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가맹본부

업 체 명 : 마켓프레쉬(주) 대표이사 주재훈 (인)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과원로 84, 1층(연동)

브랜드명 : 마켓프레쉬

연 락 처: 064-744-8945

1. 본인은 "가맹본부" 로부터 아래의 각 사항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u>202</u> <u>년 월</u> <u>일 가맹본부의 사무실(실재교부장소)에서 서면(교부방법 기재)으로</u> 교부받아 정보공개서 전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마켓프레쉬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 (2) 마켓프레쉬 정보공개서 목차
 - 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마.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바.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아. 교육・훈련프로그램
 - 자.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다.
- ① 그렇다 □ ②그렇지 않다 □

본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 또는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수령 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희망자

성 명: (인 또는 사인)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가맹본부

업 체 명 : 마켓프레쉬(주) 대표이사 주재훈 (인)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과원로 84, 1층(연동)

브랜드명 : 마켓프레쉬

연 락 처: 064-744-8945

1. 본인은 "가맹본부" 로부터 아래의 각 사항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u>202</u> <u>년 월</u> <u>일 가맹본부의 사무실(실재교부장소)에서 서면(교부방법 기재)으로</u> 교부받아 정보공개서 전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마켓프레쉬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 (2) 마켓프레쉬 정보공개서 목차
 - 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마.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바.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아. 교육・훈련프로그램
 - 자.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다.
- ① 그렇다 □ ②그렇지 않다 □

본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 또는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인근가맹점 현황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생년월일: 연락 처:

가맹본부

업 체 명 : 마켓프레쉬(주) 대표이사 주재훈 (인)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과원로 84, 1층(연동)

브랜드명 : 마켓프레쉬

연 락 처 : 064-744-8945

1. 본인은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리스트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수령여부			
	十正	수령날짜	확인		
저 ㅠ 에 저 ㄲ ㅎﻟ저 ㅣㅣ	정보공개서와				
점포예정지 확정 시	동시수령				
점포예정지	점포 확정 후 정보공개서와				
미확정시	별도로 추후 수령				

2. 인근 가맹점 현황

No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202 년 월 일